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제 3343호
2016. 4. 4. (월)

함께
서울



목 차

◆ **자치법규**

[입법예고]

제2016-773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(안) 입법예고 2

자 치 법 규

[입법예고]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-773호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(안)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6년 4월 4일
서울특별시장

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정이유
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의 규제완화와 개발을 통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관련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, 사업시행자 등을 규정함 (안 제1조~제4조)
나. 사업 대상지, 사업의 유형, 사업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함 (안 제5조~제7조)
다. 주민등의 의견청취, 사업계획의 결정 및 취소 등을 규정함 (안 제8조~제10조)
라.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이행방안 및 도시관리계획의 규제 완화, 주차장설치기준 완화, 사업지원기관의 지정운영 등을 규정함 (안 제11조~제14조)
마.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건설, 공급에 대한 규정,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을 규정함 (안 제15조~제17조)
바. 적용 특례사항을 규정함 (안 제18조)
사. 통합심의회위원회의 설치, 구성·운영, 위원장의 직무, 심의대상 등의 사전검토, 회의소집 및 운영 등을 규정함 (안 제19조~제23조)
아. 시행기간에 대해 규정함 (부칙안 제1조~2조)
3. 의견제출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(참조 : 임대주택과장,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과(전화 : 2133-7053, FAX : 2133-0756, E-mail : sooyoungkim@seoul.go.kr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

함께 서울

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

- 안전한 서울
-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
- 숨쉬는 서울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									
	람								